

언론 스스로 윤리위 권위 키워야

신문윤리강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신문윤리강령



해 96년 4월 7일은 우리 신문의 역사에서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의 날이 40주년 기념을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이 바로 한국신문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신문 창간 100년을 기념하는 이날 한국의 언론인들은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자유·자율언론의 역사 이정표를 새로 세웠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시대감정에 맞는 윤리강령

물론 우리나라의 신문윤리강령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자유당 독재와 언론탄압에 항거하여 전국언론인들의 단체로 57년에 발족한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발족과 함께 처음 제정 선포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 강령은 천관우 등 당시 한국의 대표적 언론인들에 의해 기초되어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을 계기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음 신문윤리강령을 만

들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전체적으로 언론의 타율을 강요하는 분위기였기에 윤리강령 제정의 취지도 막강한 정권의 위세앞에서 언론의 자유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기규제적 노력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언론자유가 크게 확대보장된 오늘의 시대상황에서 언론인들은 과거의 타율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윤리강령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과거 윤리강령이 상황윤리적 규범을 강조했다면 오늘의 시대감정에 맞는 실천적 윤리강령을 만들 필요도 있었다. 그래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자유언론풍토에 기반을 둔 언론과 언론인의 구체적 행동 윤리가 될 수 있게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 처음 신문윤리강령을 만든 과정과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이 다를 수는 없지만 성장한 언론의 현실을 기반으로 선진 언론자유국들의 신문윤리

공종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를 도입한 내용도 훨씬 구체화되고 성숙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50년대에 처음 신문윤리강령 제정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신문윤리의 대개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 그들도 당시 선진 외국의 언론인들이 어떤 식으로 신문인의 윤리를 유지하는가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50년 몬테 비데오에서 열린 유엔보도자유 소위원회가 발표한 국제신문인윤리강령 초안과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의 윤리강령, 미국 신문기자협회의 행동강령 그리고 미주리대학이 제시한 신문윤리강령 등을 두루 종합해 초안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만 외국의 언론 윤리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언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언론자유를 얹어매는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이 그 종합과정에서 우리의 언론여건과 언론 역사전통에 입각해 '언론자유의 수호'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문의 자유에 부단히 도전하는 정치권력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이에 맞서는 언론의 권리옹호와 민중의 알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제1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좀더 구체

적으로 보면 50년대 우리언론이 품격유지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그때 제정된 언론윤리강령도 자유 책임, 보도와 평론의 태도,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품격 등 5개 항으로 충분했다고 할 것이다.

특정정당 지지 가능

그러나 개정된 이번 강령은 언론의 자유 확보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 자유언론환경에서 특히 중시되어야 할 언론과 언론인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 평론 활동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과정에서 무시되곤 한 독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분명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그것이 다름아닌 개인의 인격권과 반론권을 보호하는 측면이다.

이번 신문윤리강령 개정과정에서도 미국의 신문편집인협회의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린시플'과 '캐논 오브 저널리즘', 영국의 언론불만처리 위원회(PCC)의 '코드 오브 프레티스' 등 강령과 실천요강,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나 뉴저지 저널 등의 윤리준칙이 참고되었다. 그리고 특히 언론선진국의 자유언론상황과 우리의 언론상황이 매우 근접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보다 언론의 책임윤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 결과 실천요강 가운데서도 평

론의 원칙에서 사설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밝히는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고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종래 우리언론들이 불편부당의 원칙을 마치 금과옥조로 생각해온 관례에서 보면 혁명적인 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문이 확실한 정치적 입장을 표하지 않는 것은 독자의 동향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도 선거법이 언론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신문의 정치적 입장표명을 금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 언론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신문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분명히 밝히고 독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떳떳하다는 생각이 그들 에겐 이미 정착돼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신문윤리가 이런 정도의 언론의 책임과 용기를 확보할 수 있 는 수준이 된다면 이는 큰 발전일 것이다.

실천요강 세분화

그렇다고 개정된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기존의 강령이나 요강과 판이하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근 40년의 시대변화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강령 전문이 고쳐지고 인간존중과 반



론권 보장 등 2개 조항의 신설이 있었으며 요강도 기존의 4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를테면 취재준칙, 취재원의 명시 원칙, 평론의 원칙, 편집자침, 어린이 보호, 재정정보의 부당이용금지 등 항목이 신설되고 세부규제항목도 28 개부문에서 63개 부문으로 세분되었다.

특히 기존의 실천요강이 단 4개 항목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구체적 현실에서 그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도기준을 붙인데 비해 개정된 실천요강은 취재준칙, 보도준칙, 사법보도, 취재원 명시와 보호, 엠바고, 범죄보도, 표절 금지, 평론 원칙, 편집 지침, 명예 신용존중, 사생활 보호, 어린이 보호,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등 더욱 세분된 항목으로 구체화해서 아예 별도 기준으로 해석상의 갈등을 빚을 소지를 없앴다.

그렇다고 이 강령과 요강이 언론과 언론인들이 보도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전부 해소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적어도 언론인들이 이 개정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하기로 할 경우 종래 보도와 취재에서 빚어진 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 강령과 요강이 언론인

들에 의해 또 각 언론사에 의해 혼례 히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강령과 실천요강은 물론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제정했기 때문에 그 준수결의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 협회들의 모든 가맹사와 소속언론인들이 실제로 이를 준수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

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신문윤리강령이나 그 실천요강은 언론사와 언론인이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대표적인 언론인 단체가 힘을 합쳐 자율적으로 만든 것인 만큼 그 준수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강령의 이행이나 요강이 살아있는 윤리 척도가 되고 행동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준수노력이 없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준수노력은 언론들의 자발성 이외에 언론사와 윤리위원회의 강령과 요강의 적극 활용으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언론사가 이 실천요강의 규정을 언론인의 기본 수칙으로 삼아 이를 어긴 자사소속의 기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자연 이

강령이나 요강의 실제적 영향력이나 효용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신문계 유일의 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기준으로 심의활동을 하게 되면 이 역시 강령과 요강의 가치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계 전반은 물론 대사회적 언론자율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각 언론사의 심의나 징계활동보다 더 중시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문윤리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우선 언론에 대한 불만이나 이해상충 관계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문윤리위원회가 간여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다. 원래는 신문윤리위원회에도 심의부 이외에 제소부가 있어서 독자와 신문간의 마찰을 중재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업무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관된 것이다.

뿐더러 과거에는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모든 매체에 기사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언론인과 언론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 존재와 기능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별로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

제재의 내용을 사회가 알 수 있으면 위반사례가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언론과 언론인 자신이 신문윤리위원회의 권위를 키워가는 노력이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해진다.

게 되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의 발족 역사를 생각하거나 그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생각하면 그런 평가변화에 대한 우려감도 생기지 않을 수 없다. 61년 4월 6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신문윤리위원회 설치안과 윤리요강 작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에 따라 신문윤리위원회는 그해 9월 12일 정식 발족했다. 이 사실은 신문윤리위원회가 5·16 이후 준동한 군사독재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시녀단체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독재세력의 언론규제에 맞설 언론인들의 독립의지와 품위를 위해 애쓴 순수한 언론인들의 자율기구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초창기 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한 언론인 자신의 기대는 심의 결정문의 소홀한 보도 관행으로 점차 약화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잘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매년 발행하는 심의결정집을 보더라도 93년 328건, 94년 246건의 제재가

있었다. 신문의 종수와 지면이 증가되는 현실에 비추어 결코 많은 제재 건수는 아니지만 우리 신문들이 언론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된다.

다만 94년 4월부터 95년 3월까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것 가운데 보도기준위반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위반이 66건, '보도와 평론의 태도' 장 위반 33건, '품격' 장 위반 25건, '독립성' 위반 6건, '책임' 장 위반이 1건이었다. 또 이 기간에 광고제재도 48건이 있었다. 과대광고 28건, 책임소재불명 9건, 법규위반 5건, 기사혼동광고 4건, 품격저하 2건 등이었다.

심의 업무 효율화 기대

물론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는 일정한 것은 아니다. 주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정정, 취소, 사과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가 있다. 그리고 같은 제재절차는 신문지면에 보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의 제작에는 당장 큰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것이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문사 내에서 위반 책임자에 대한 상당한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약한 것만은 아니다.

이번 새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채택으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천요강이 곧 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되는 만큼 새 실천요강 체제에 따른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신문윤리위원회가 사단법인체로 모습이 바뀐다고 해도 심의상의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 윤리강령과 새 실천요강의 채택 이후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좀더 효율화할 수 있기 를 바라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 신문사에 은밀히 전달되는 심의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재의 내용을 사회가 알 수 있으면 신문의 위반사례가 줄 것이고 독자들의 의견개진 기회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언론과 언론인 자신이 신문윤리위원회의 권위를 키워가는 노력이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해진다. ☺